자산관리규정

제정 2009. 8. 7. 규정 제25호 [시행 2012.11.28.] [규정 제145호, 2012.11.28., 일부개정] [시행 2012.12.27.] [규정 제149호, 2012.12.27., 일부개정] [시행 2015.10.30.] [규정 제237호, 2015.10.30., 일부개정]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장학재단의 자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·유지·보존 및 운용과 처분 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12,12,27.〉

- 1. "자산"이란 부동산(토지, 건물, 구축물 등을 말한다)·동산(기계장치 등을 말한다) 등의 유형자산과 상표권, 실용신안권 등의 무형자산 및 임차보증금, 전신전화가입권 등의 기타자산을 말한다.
- 2. 삭제〈2012.12.27.〉
- 3. "소모품"이란 자산에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써 문방구류, 인쇄용지 등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는 물품을 말한다.
- 4. "불용품"이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동산으로서 불용결정된 것을 말한다
- 5. "공관"이란 임원이 사용하는 주택(아파트 등)을 말한다.
- 6 "합숙소"라 임직원의 연수후련과 직원의 숙식 편의를 위하여 유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7. "임차사택"이란 재단이 재단 명의로 임차하여 직원 및 그 부양가족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.

[제3조에서 이동 ,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〈2012.12.27.〉]

제3조(다른 법규와의 관계) 한국장학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 자산의 관리(취득·유지· 보존 및 운용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
「제목개정〈2012.12.27.〉〕

[제2조에서 이동,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〈2012.12.27.〉]

제4조 삭제〈2012.12.27.〉

제5조(자산관리의 책임) ① 자산 업무 담당 부서장은 자산관리의 총괄책임자가 된다. 〈개정

2012.12.27.

- ② 제1항의 총괄책임자는 자산 관리 업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장에게 위임하거나, 위임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〈신설 2012.12.27.〉
- 제6조(관리 기준) ① 유형자산으로 취득 · 관리하여야 할 품목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 - ② 총괄책임자는 자산 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소관별, 사업별 또는 성질별 등으로 적정히 분류하여 관리하거나, 표준, 정수, 내용연수 그 밖의 기준 등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- 제7조(수급계획) ① 총괄책임자는 매년 해당 회계연도에 수급해야 할 자산에 대한 수급계획을 예산과 업무계획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수급계획은 원칙적으로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집행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③ 자산의 구입은 수급계획 내에서 함을 원칙적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
- 제8조(자산의 이관)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총괄책임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장에게 자산을 이관할 수 있다. 〈개정 2012.12.27., 2015.10.30.〉
 - ② 삭제〈2012.12.27.〉
- **제9조(관리보고)** 총괄책임자는 자산의 변동 및 증감사항을 매년 자산 업무 담당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2.12.27., 2015.10.30.〉

제2장 자산의 취득·처분 및 관리 등 〈개정 2012,12,27.〉

제1절 취득 및 처분

- 제10조(부동산의 취득과 처분) ① 부동산을 취득·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적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〈개정 2012.12.27.〉
 - 1. 소재지
 - 2. 규모 및 구조
 - 3. 지목
 - 4. 소유자 인적사항
 - 5. 취득 또는 처분가격,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.
 - 가. 취득의 경우: 취득 후 소요되는 수리비 및 등기비
 - 나. 처분의 경우: 장부가격

- 6. 취득 또는 처분방법
- 7. 취득 또는 처분사유
- ② 제1항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- 1. 등기부등본
- 2. 시가감정서,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가감정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.
- 3. 지적도 및 위치도
- 4. 건물평면약도(각층별 도면을 말한다)
- 5. 매매계약서(계약서 안을 포함한다. 이하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같다)
- 제11조(동산의 취득과 처분) ① 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〈개정 2012.12.27.〉
 - 1. 품명
 - 2. 종별
 - 3. 규격
 - 4. 수량
 - 5. 취득 또는 처분가격.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. 가. 취득의 경우: 매입 부대 비용
 - 나. 처분의 경우: 장부가격
 - ② 제1항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 - 1. 신청서
 - 2. 시가조서
 - 3. 매매계약서
- 제12조(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) 무형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목적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 - 1. 종류 및 수량
 - 2. 취득 및 처분가격
 - 3. 취득 및 처분방법
 - 4. 취득 및 처분사유
 - 5. 대금정리방법
- 제13조(건축물의 축조 등) 건축물의 신축, 증축, 개축, 철거 또는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적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〈개정

2012.12.27.>

- 1. 소재지
- 2. 종별
- 3. 구조
- 4, 면적
- 5. 사유
- 6. 공사검토서 등

제14조(임대차) ① 부동산을 임차 또는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적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〈개정 2012.12.27.〉

- 1. 부동산의 표시, 소재지, 지목 또는 구조, 면적
- 2. 임대차인 인적사항
- 3. 임대차 계약조건
- 가. 임대차보증금
- 나. 월정임대차료
- 다. 기간
- 라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4. 계정처리과목
- 5. 채권보전방법
- 6. 부보관계
- 7. 임차부동산에 대한 사전조사사항
- 8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② 동산 및 무형자산을 임차 또는 임대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.

제15조(취득일) 자산의 취득일은 취득에 대한 대가지급 완료일로 한다. 다만, 대가 지급 완료이전에 해당 자산에 대해 이전등기·등록을 받거나, 인수 또는 사용수익을 하게 된 경우그 일자를 취득일로 한다. 〈개정 2012,12,27.〉

제16조(계정처리) ① 삭제〈2012.12.27.〉

- ② 재단이 부동산을 임대 또는 임차하였을 경우 보증금 및 차임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〈개정 2012.12.27., 2015.10.30.〉
- 1. 임차한 경우: 보증금은 자산으로 처리하고. 임차료는 비용으로 처리함
- 2. 임대한 경우: 보증금은 부채로 처리하고, 임대료는 수익으로 처리함
- ③ 동산을 임대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17조 삭제〈2012.12.27.〉

제2절 자산의 유지·보존 등 〈개정 2012,12.27.〉

- 제18조(관리대장의 비치와 정리) 총괄책임자는 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취득, 처분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산별 관리대장은 전산명세로 갈음할 수 있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- 제19조(권리보전) 총괄책임자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등기·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자산의 권리 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도 같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- **제20조(권리증의 보관)**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원본은 총괄책임자가 보관하고 사본은 자산을 이관 받거나 자산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보관하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- 제21조(자산의 보관) ① 부서에서 보관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보관의 책임을 지며, 해당 부서장은 부서 내 자산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부서별 자산관리대장에 자산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2.12.27., 2015.10.30.〉
 - ② 해당 부서장은 자산의 보수(補修)가 필요한 경우 총괄책임자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5,10.30.〉

[제목개정〈2012.12.27.〉]

- 제22조(등기 및 담보설정) ① 총괄책임자는 토지,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여야하며, 그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 등이 항상 부동산의 공부(公簿)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2.12.27.〉
 - ② 총괄책임자는 부동산을 임차하였을 경우 임차보증금과 임대인의 위약으로서 재단에 발생할 배상금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 - ③ 제2항 이외에도 총괄책임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저당 권 설정, 연대보증인 입보 등 담보 설정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〈신설 2012.12.27.〉

[제목개정〈2012.12.27.〉]

- 제23조(보험가입) 총괄책임자는 건물 등 주요 자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 가입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1. 건축물(제4호의 임차한 건축물은 제외한다): 재산종합보험 또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야 하며, 이 경우 보험금액은 해당 자산의 잔존가액 이상으로 함. 다만, 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시가까지로 할

수 있다.

- 2. 동산(제3호의 차량 및 제4호의 건축물 내 존재하는 동산은 제외한다): 재산종합보험 또는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보험금액은 해당 자산의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일괄 가입함. 다만, 해당 동산의 장부상 가액이 없는 경우 보험금액은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.
- 3. 차량: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함
- 4. 임차한 건축물(건축물 내 존재하는 가구 등 동산을 포함한다):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임대인의 부담으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해당 보험수익권을 재단 앞으로양도하거나 해당 보험수익권에 대해 질권 설정을 하도록 함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의 부담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있다.
 - 가. 임대인이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
 - 나. 임대인이 보험수익권의 양도 또는 보험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. 임대인이 보험 가입 대상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

[전문개정〈2012.12.27.〉]

- 제24조(재물조사) ① 총괄책임자는 연 1회 동산에 대하여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재물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- 1. 실시자: 자산 관리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직원이 실시함. 다만, 효율적인 재물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2. 방법: 장부상 품목과 실물을 정확히 대조 확인하고,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따름
 - 3. 자산가격: 장부가격으로 함. 다만, 장부가격이 불분명할 때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격으로 할 수 있다.
 - ③ 총괄책임자는 해당연도 재물조사 결과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회계 결산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5,10,30,〉

「전문개정〈2012.12.27.〉〕

- 제25조(손실품에 대한 변상 등) ① 자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자산에 망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총괄책임자는 자산에 망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있는 자에게 변상 명령을 할 수 있다. 다만. 책임이 있는 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변상책임

- 을 감면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기 전에 총괄책임자는 미리 변상책임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④ 제2항의 변상에 있어 변상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- 1. 자산을 전용(專用)한 경우: 전용자가 변상책임을 짐
- 2. 자산을 2명 이상이 공동 사용한 경우: 각자의 행위가 손실에 끼친 정도에 따라 공동으로 변상책임을 짐. 다만, 각자의 행위가 손실에 끼친 영향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.
- ⑤ 제2항의 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상액을 평가하여 현금으로 변상한다. 다만, 현금에 의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, 망실 또는 훼손된 자산의 손실 당시 상태 이상인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.
- 1. 변상액 평가 시점: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시점으로 함. 다만,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으로 한다.
- 2. 변상액 평가 방법: 변상액 평가 시점 당시 해당 자산의 가격, 감가정도, 내용연수 등을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함

[전문개정〈2012.12.27.〉]

제26조(임차보증금의 손실발생시 처리) 임차보증금이 경매 등에 의해서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조사, 채권보전조치, 시효관리 등을 실시한다.

제27조 삭제〈2012.12.27.〉

제28조 삭제〈2012.12.27.〉

제29조 삭제〈2012.12.27.〉

제3절 삭제 〈2012.12.27.〉

제30조 삭제〈2012.12.27.〉

제31조 삭제〈2012.12.27.〉

제4절 공관, 합숙소 및 임차사택 〈개정 2012.12.27.〉

제32조(관리책임) ① 공관 및 합숙소를 대여 받은 임직원은 그 사용 및 임차보증금 관리에 있어 재단을 대신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 〈개정

2012.12.27.

- ② 제1항의 임직원은 화재나 건물파손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임직원은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
- ④ 임원이 공관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관의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직원을 임시 거주하게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- **제33조(면적기준 등)** ① 합숙소의 수 및 위치는 총괄책임자가 수요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한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 - ②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 또는 합숙소 퇴소 등으로 인해 합숙소의 이용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합숙소 인원이 보충될 때까지 종전의 규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 - ③ 공관의 규모는 전용면적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우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고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는 복도, 계단 등 공용부분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. 이하 제4항에서 같다) 69㎡ 이내로 한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 - ④ 합숙소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 - 1. 이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: 전용면적 69㎡ 이내
 - 2. 이용자가 4명 이상인 경우: 전용면적 85㎡ 이내
 - 3. 이용자가 6명 이상인 경우: 전용면적 118㎡ 이내
 - 4. 이용자가 8명 이상인 경우: 전용면적 151㎡ 이내
 - 5. 본사소재지는 연수계획 등을 감안하여 총괄책임자가 정함
 - ⑤ 삭제〈2012.12.27〉
 - ⑥ 총괄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적기준을 초과하여 공관 및 합숙소를 취득 또는 임차할 수 있다.
- 제34조(집기 및 비품) 공관 및 합숙소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재단예산으로 구입하며 그종류 및 수량은 별표 2의 범위 안으로 한다. 다만,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집기 및 비품이 필요한 때에는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- 제35조(비용 부담) 공관, 합숙소 또는 임차사택(「복지규정」에 따른 임차사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계약 및 권리보전에 따르는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에 대하여는 재단이 이를 부담한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 - 1. 감정료: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제35조

- 2. 소개료: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각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 금액
- 3. 등기부 등본 발급 및 열람 비용:등기 관련 수수료를 규정한 대법원 규칙에 따른 금액
- 4.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비용:「법무사법」제19조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가 정한 보수
- 5. 화재보험료: 해당 보험회사에서 정한 요율에 따른 금액
- 6. 보증금 보장 신용보험료: 해당 보험회사에서 정한 요율에 따른 금액 [제목개정〈2012.12.27〉]
- 제36조(시가조사) 공관, 합숙소 또는 임차사택(이하 "공관 등"이라 한다)를 임차할 때에는 시가조사를 하여야 한다.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.〈개정 2012,12.27.〉
- 제37조(사후관리) 공관 및 합숙소에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경매신청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이를 조속히 해소하도록 하며 채권보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38조(수선) 공관 및 합숙소의 수선은 그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의 경비로 부담한다.
- 제39조(관리비 등) 공관 및 합숙소의 전력수도료, 연료비, 아파트관리비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경비로 부담할 수 있다.
- 제40조(증·개축 및 구조변경) 공관 및 합숙소의 증·개축 그 밖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중요한 공사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**제41조(기타)** ① 그 밖에 공관 및 합숙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괄책임자가 결정한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 - ② 그 밖에 임차사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임차사택 및 합숙소 운영세칙」으로 정한다. 〈신설 2012.12.27.〉

제5절 수리 〈개정 2012.12.27.〉

- 제42조(수리공사) 총괄책임자는 수리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전결권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공사용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 - 1. 설계도서
 - 2. 공사비추산서
 - 3. 그 밖의 참고자료

[제목개정〈2012.12.27.〉]

- 제43조(수리공사의 승인신청) ① 소관 자산에 대한 수리공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배정된 예산 범위내의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 - 1. 신청서
 - 2. 설계도서
 - 3. 2인 이상 견적서
 - 4. 그 밖의 참고자료 등
 -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총괄책임자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공사금액을 심사하여 승인한다. 〈개정 2012,12,27.〉

[제목개정〈2012.12.27.〉]

- 제44조(설계변경) ① 총괄책임자는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의 사유, 신·구설계서와 시방서, 도면, 공사비증감명세서를 갖추어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 -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사 설계변경에 수반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45조(공사의 시공) ① 수리공사의 시행은 도급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규모 또는 성질에 따라 직접 시행할 수 있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 - ② 관공서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시행함이 재단에 유리한 공사일 경우는 총괄책임자 가 작성한 공사비 추산서에 의거 그 공사비만을 지급하고 공사를 대행케 할 수 있다.
- 제46조(계약서등의 작성)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(내역서를 포함한다)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- **제47조(공사의 준공보고)** 수리공사를 준공(竣工)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2.12.27.〉
- 제48조(공사 준공일의 연기) 공사 중 예기치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 진척에 차질이 생기 거나 또는 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준공기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44조를 준용한다.
- 제49조(공사의 감독 및 검사) ① 공사의 감독 및 검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공사도급계약 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공사의 감독 및 검사자는 총괄책임자가 지명한 자가 행한다. 다만,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관계기술자의 입회아래 행한다.
 - ③ 감독 및 검사내용은 검사자 및 기술자의 연서로써 총괄책임자에게 보고 한다
- 제50조(수리공사의 계정처리) 수리공사 중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비용으로 처리하고,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자산으로 처리한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
[제목개정〈2012.12.27.〉]

제3장 부외자산

제1절 통칙

- 제51조(부외자산) ① 부외자산이란 현실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하고 있으나 증여 · 잉여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어 회계장부상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성질상 당연히 자산으로 취급되어야 하거나 자산으로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. 〈신설 2012.12.27.〉
 - ②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임차자산·담보자산·국유 자산 등은 부외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.

[제목개정〈2012.12.27.〉]

- 제52조(부외자산의 자산등재) ① 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재하는 경우의 등재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평가액으로 한다. 이 경우 등재가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.
 - ②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서 제각된 자산으로서 잔존가액 배분할 수 없는 자산은 적절한 구분에 따른 평가에 의거 자산에 등재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가익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.
 - ③ 기증·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적절한 평가를 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유형자산 또는 특정 저장품에 등재한 가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.
 - ④ 수익적 지출에 의하여 비용 처리된 자산으로서 사용 후 반납된 것은 그 상태를 감안하여 재생 후 재입고 시키거나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재생 후 그 상태에 따른 평가액을 입고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액에서 재생비용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.
- 제53조(임차자산 등의 관리) 임차자산 등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자산은 원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, 유지에 지출된 비용은 그 자산의 용도에 따라 영업비용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.
- 제54조(비망등재가액) 관리대장에 등재할 가액을 적절히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망가액으로 한다. 이 경우 비망가액은 1,000원으로 한다.

제2절 소모품의 구입〈개정 2012.12.27.〉

- **제55조(구입)** 소모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구입한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- 제56조(일괄구입) 총괄책임자는 여러 소모품들을 일괄하여 구입하는 것이 재단에 유리한 경우 해당 소모품들을 일괄하여 구입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〈2012.12.27.〉]

- 제57조(검수) ① 납품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해당 소모품의 발주시의 견품 또는 사양서에 의하여 검수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 - ② 제1항의 검수에 있어서 기술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기술자에게 의견을 들어야한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
제3절 소모품의 사용 〈개정 2012.12.27.〉

- 제58조(청구) 각 부서는 소모품이 필요한 경우 물품청구서에 용도 및 수량을 명시하여 총괄 책임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- 제59조(일괄구입품의 청구) 각 부서는 제56조에 따라 일괄 구입한 소모품들 중에 해당 부서에서 청구한 것이 있는 경우 해당 소모품의 배분을 요청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〈2012.12.27.〉]

제60조(그 밖의 부외자산의 관리) 그 밖의 부외자산의 관리는 그 성질에 따라 유형 및 무형 자산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.

제4장 불용품의 처분

제1절 불용결정 및 처분

- 제61조(불용결정기준)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불용 결정할 수 있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 - 1.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자산
 - 2. 정수를 초과하는 자산(정수관리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)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
 - 3. 원장비(原裝備)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
 - 4.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

자산

- 5. 시설물에서 제거된 자산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자산
- 6.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자산
- 7. 수선이 필요한 자산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자산
-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산
- 제62조(불용결정 승인신청) 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총괄책임자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2,12,27.〉
 - 1.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자산의 목록번호, 품명, 품목, 수량 및 가액
 - 2. 자산의 구입 연월일과 자산의 상황
 - 3. 자산의 사용 경위
 - 4. 불용의 결정을 하는 이유
 - 5.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의 확인 여부
 - 6. 처분방법
- **제63조(불용품의 처분)** 불용품의 처분은 매각, 무상 양여, 해체, 폐기 등의 방법에 의한다. 〈개 정 2012.12.27.〉

제64조 삭제〈2012.12.27.〉

- 제65조(매각) ① 불용품을 매각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가격 또는 견적서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불용품의 성질 또는 처분비용의 과다 등의 사유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〈개정 2012.12.27.〉 ② 그 밖에 불용품의 매각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내규를 따른다. 〈신설 2012.12.27.〉
- 제66조(무상 양여) 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용품에 대해서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교육기관, 연구기관,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 - 1. 매각되지 아니하는 자산 또는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자산
 - 2. 매각하는 것이 재단에 불리하거나 적당하지 않는 자산
 - 3.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
 - 4. 법률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금지된 자산
 -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2.12.27.〉
 - 1. 양여 받는 자의 명칭, 성명(기관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) 및 주소
 - 2. 자산의 분류번호, 품명, 품목, 수량 및 가액

- 3. 자산의 사용 경위
- 4. 자산의 상태
- 5. 무상 양여하는 사유
- 6. 계약서 및 수령증

[제목개정〈2012.12.27.〉]

제67조(해체) 총괄책임자는 불용품 중 이용 및 매각 가능한 부분이 있는 등 불용품을 해체하는 것이 관리 및 처분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해체할수 있다.

[전문개정〈2012.12.27.〉]

- 제68조(폐기) 총괄책임자는 불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폐기할 수 있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 - 1. 양여.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불용품
 - 2. 변질 · 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불용품
 - 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매각하면 재단에 불리하거나, 매각할 수 없거나 또는 매각하기 부적당한 경우

제2절 처분결과 보고

- 제69조(처분결과 보고) ① 총괄책임자는 불용품을 처분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처분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전결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매각인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. 〈개정 2012.12.27.〉
 - 1. 처분의 구분
 - 2. 처분일자
 - 3. 처분대금
 - 4. 해체에 의한 활용품의 명세
 - 5. 페기 집행자 및 입회자의 직명·성명
 - ② 총괄책임자는 불용품처분이 해체 또는 폐기에 의한 때에는 불용품처분 결과보고서에 해체 또는 폐기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칙 〈신설 2012.12.27.〉

제70조(취득 및 처분 내역 등 공개) 총괄책임자는 자산의 취득 · 처분 업무 절차 및 취득 ·

처분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2.11.28.〉

제71조(특혜의 금지) 자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 특정 개인,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특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〈신설 2012.11.28.〉

제72조(제재조치)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서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내규에 따라 관계자들을 징계한다. 〈신설 2012,11.28.〉

부칙 (제정)

이 규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규정 제145호, 2012.11.28.) (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을 위한 내규관리 규정 등일부개정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규정 제149호, 2012.12.27.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산 관리 책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IT전략부장 이 총괄책임자였던 전산 관련 자산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총괄책임자로부터 IT전략부장에게 종전 범위에서 관리 책임이 위임된 것으로 본다.

부칙〈규정 제237호, 2015.10.30.〉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〈개정 2015.10.30.〉

<u>유형자산의 종류</u>

구 분		종 류	
1. 부동산의 경우	가. 업무용토지 나. 기타 토지 다. 업무용건축물 라. 기타 건축물	본사·지사 및 소속건축물의 대지 (공관 합숙소용 대지 포함) 전호에 속하지 아닌하는 소유 토지 본사·지사 및 부속건축물(공관, 합숙소 건축물 포함) 전 "다"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축물	
2. 동산의 경우	가. 업무용기계	복사기, 문서세단기,절단기,승강기,냉동기,윤전등사기 프 및 콤프레샤,공기조화기,공기청정기,온수기,보일러 화교환대,자동전화기계,팩스밀리,사진기,어학실습기,빌 기,변압기,자동누전경보기,화재경보기,마이크로촬영기 광선촬영기,의료용기계,촬영기,영사기,비디오프로젝터 습기,양수기,가스렌지,집진기,자동전압조정기,전기청소 자판기,사진확대기,원심분리기,써치라이트,분무기,프로 가스경보기,전기측정기계,비상경보기,시간기록기계,접 기,인쇄기,확성장치, 피아노,세탁기,전산시스템관련기	
	나. 업무용비품	기타 취득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기계류 OA가구,천공기,칸막이,사다리,소화기,전기히터,카드상자, 시계,저울,식탁,옷장,책상류,의자류,탁자류,응접셋트,금고, 금고비,내화서고,캐비넷류,파일박스,잡지꽂이,화이트보드, 객장용 장의자,침대,페이드기,전화기,자전거,냉장고,전자 렌지,선풍기,환풍기,오디오,VTR,텔레비젼,녹음기,라디오, 인터폰,옷걸이,서가,기타 취득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비품류	
	다. 업무용차량	자동차 등	

[별표 2]

집기 및 비품의 종류와 수량

번호	국 나	}	해 외	
1	응 접 세 트	1 조	응 접 세 트	1 조
2	전 화 기	1 대	전 화 기	1 대
3	6인용 식탁의자	1 조	캐 비 넷	2 대
4	가 스 렌 지	1 대	식 탁 및 의 자	1 조
5	찻 장	1 개	책 장	1 개
6	선 풍 기	2 대	옷 장	3 개
7	옷장 겸 이불장	2 개	찻 장	1 개
8	주 방 용 기 구	1 식	2 인 용 침 대	1 개
9	책 장	1 개	1 인 용 침 대	3 개
10	소 화 기	2 개	냉 장 고	1 대
11	책 상,의 자	각 1개	냉 방 기	2 대
12	T.V 수 상 기	1 대	선 풍 기	2 대
13	냉 장 고	1 대	T.V 수 상 기	1 대
14	세 탁 기	1 대	책 상,의 자	각 2개
15	라 디 오	1 대	가 스 렌 지	1 대
16	벽 시 계	1 대	세 탁 기	1 대
17	옷 걸 이	1 개	주 방용기구	1 식
18	에 어 컨	1 대	융 단 청 소 기	1 대
19			잔디 깍는 기계	1 대
20			소 화 기	적정량
21			옷 걸 이	1 개
22			벽 시 계	1 개